

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(제31조제2항 관련)

보고 대상자	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종류	보고내용	보고방법	보고기한
1.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	가. 가정용·상업용 액화석유가스(1호)	지난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, 판매대상별(액화석유충전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판매사업자) 내수판매량,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	전자보고	매월 23일
	나.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(2호)			
2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	가.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(2호)	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(L) 정상 판매가격	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	수시 (가격 변경시 6시간 이내)
	나. 가정용·상업용 액화석유가스(1호)	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(kg) 정상 판매가격		매월 2일
	다.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(2호)			
3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	가정용·상업용 액화석유가스(1호)	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부피 단위(m³) 정상 판매가격	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	매월 2일
4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	가. 가정용·상업용 액화석유가스(1호)	이번 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중량 단위(kg) 정상 판매가격	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	매월 2일
	나.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(2호)			

비고

1. 위 표에서 “전자보고”란 인터넷, 부가가치통신망(VAN)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, “그 밖의 보고”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,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

다.

2.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.